

# 18世紀 濟州內奴婢의 土地所有

— 濟州·大靜 無後奴婢 量案을 中心으로 —

姜 昌 龍\*

## 序 言

朝鮮王朝의 奴婢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서 田畝와 같은 토지 뿐만 아니라 奴婢까지 소유한 경우도 많았다. 財産을 소유한 奴婢는 신분적으로 主人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經濟적으로 主人家나 所屬官司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經濟活動을 할 수 있었다. 朝鮮前期의 內需司 奴婢는 內奴로 定役되어 傭내에서 잡역을 맡는 외에는 대개 王室 私有的 田地를 경작, 管理하거나 長利를 담당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外居奴婢였다.<sup>1)</sup> 內需司 奴婢는 법제상 各司所屬의 公賤이었기 때문에 選上이나 納貢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內

\* 숭실대학교 대학원

1) 長利는 10斗에 利息 三斗내지 五斗의 高利貸이다. 곧 “內需司長利 以私債貳十而息五 此只十而息三”(成宗實錄 十三年 十一月 丙申)

한편, 外居奴婢는 公奴婢의 경우에는 外方에 居하는 者를, 私奴婢의 경우에는 外方에 居하는 者나 主家에서 독립해 나온 者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公·私奴婢의 어느 경우라도 독립된 자기의 經理를 가지고 別戶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奴婢들이었다.

內需司奴婢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林英正 <朝鮮初期 公賤에 관한 研究- 外居奴婢 成立을 中心으로>《史學研究》23, 1973

鄭鉉在 <朝鮮初 內需司 奴婢考>《慶北史學》3, 1981

鄭鉉在 <朝鮮初期 「外居奴婢」의 개념 검토>《慶尚史學》創刊號, 1985

池承鍾 <朝鮮前期 內需司의 性格과 內需司奴婢>《韓國學報》40, 1985

全炯澤 <17·18세기 內需司의 土地所有- 「無後奴婢 個人量案」을 中心으로>《朝鮮後期奴婢 身分研究》—潮閣, 1989

金奉鉉 <李朝下의 濟州道-奴婢에 대한 통제>《濟州道歷史誌》1960년. 이 중에서 金奉鉉의 연구는 1960년대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서, 곧 內需司奴婢들은 內需司에 身貢을 바치는 대신에 국가적인 요역이 일체 면제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기 경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는 良人 農民들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需司奴婢가 國役 부담에 있어서 選上되지 않았을 때에는 身貢만 납부하면 되었다. 곧 內需司奴婢는 公賤에 편제되어 있으면서도 私宮의 外居奴婢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다.<sup>2)</sup> 그러므로 內需司奴婢의 王室에 대한 예속 상태는 壬辰倭亂을 겪고난 뒤 田庄을 경작하고 있는奴婢들의 流散으로 급속히 이완되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들어와서는 상당수의 外居奴婢가 王室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內需司 外居奴婢는 신분적으로 여전히 王室에 예속되어 있으나 경제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王室의奴婢에 대한 지배와 파악이 그만큼 약화되었던 것이다.<sup>3)</sup> 이 글에서는 濟州地方의 無後內奴婢 個人量案을 검토 분석하여 濟州 社會의奴婢 身分變動의 경제적 배경을 살피려고 하였다. 먼저 資料의 성격을 검토한 다음 資料상의 內奴婢의 土地所有 狀況과 內奴婢 土地所有의 性格 등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公奴婢의 經濟的 存在樣態와 나아가서는奴婢 身分變動의 배경을 살피려는 것이다.

## 一. 資料에 대하여

1. 《濟州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畝因該司關文改打量庚子以後乙巳陳起區別成冊》  
1725年 12月 (田畝主- 奴近山)
2. 《大靜縣案付內需司奴婢無後已上田畝陳起打量成冊》  
1726年 1月 (田畝主- 奴盃孫·婢眞香今)
3. 《大靜縣案付內需司無後已上田畝陳起打量成冊》  
1726年 1月 (田畝主- 奴盃孫·婢眞香今)
4. 《大靜縣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畝折價放賣庫員落種數及買得人并錄成冊》  
1726年 12月 (田畝主- 奴盃孫·婢眞香今)

2) 內需司가 王室의 私藏인 本宮의 후신인 것이나, 적어도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內需司奴婢는 법제상 公賤에 편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主家인 王室의 私奴婢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外居奴婢의 국가에 대한 役務는 選上和 納貢이었다. 그들은 選上이 되면 身貢의 納付가 免除되고 選上이 되지 않으면 納貢하였다.

3) 朝鮮後期에는 商品貨幣經濟의 進展과 農業生産力의 發展으로 階層分化가 심화되어 한편에서는 無土地農之民 즉 土地에서 流離되어 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農業經營의 合理化나 廣作 등을 통하여 富를 축적해간 자들도 있었다.奴婢身分層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獨立하여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도 나타났다.

## 5. 《大靜縣案內需司已上田案中有文券混入私田畚別成冊》

1726年

1은 1725年(英祖1) 12월에 全羅道 濟州牧에서 작성한 量案으로 後嗣가 없는 內需司 奴近山の 陳起 田畚을 打量하여 만든 것이다. 본 量案을 작성한 官리는 通訓大夫 行濟州牧 判官 都尉兼監牧 林鳳瑞(1725.5-1726.7)이며 대상 지역은 現 行政 區域上의 濟州市 外道洞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量案의 기재 양식은 아래와 같다.

故司奴 近山田秩

成丹員 田肆負 自庚子至乙巳 全陳

同員 田參負伍束 庚子辛丑兩年 起奴明吉

成丹員은 밭이 있는 곳의 地名이며, 田肆負·田參負伍束은 結負法에 따른 밭의 면적(넓이)이고, 自庚子至乙巳·庚子辛丑兩年是 농사와 관련된 연도이며, 全陳·起는 경작의 유무를 밝힌 것이다. 起의 경우에는 奴明吉처럼 경작 주체를 밝혔다. 따라서 內需司 故奴近山の 田秩을 각 筆地마다 地名·結負數·年度·陳起·作人 등의 차례로 기재하여 만든 것이다.

2와3는 1726年(英祖2) 1월에 全羅道 大靜縣에서 작성한 量案으로 後嗣가 없는 內需司 奴婢(故奴盃孫·故婢眞香今)의 陳起 田畚을 打量하여 만든 것이다. 본 量案을 작성한 官리는 通訓大夫 行大靜縣監 濟州鎮管 兵馬節制都尉兼監牧 鄭運亨(1725.8-1727.11)이며 대상이 된 지역은 現 行政 區域上으로는 서귀포시 江汀洞과 貌來洞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재 양식을 직접 量案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故奴盃孫 田畚秩

無九奄員 畚二片 合五負 起奴己立 西小路

東海水員 畚十五片 合十負內 起三負 姜時傑 北小路

陳七負 同人

加內員 北凡田二庫 合十負 起奴尚任 南內田

故婢眞香今 田畚秩

廣川員 畚十片 合五負 起奴宋先 南李益茂畚

北凡 畚十片 合二負五束 起李戒札 南水洞

4 濟州島史研究

良老浦員 畚六片 合起一負 安愛任 西水洞  
足達員 西凡田二庫 合六負 起金友赤 南姜太寶田

無九奄·東海水·加內·廣川·良老浦·足達員 등은 量田 단의 내에서의 地名이며 北凡·南凡是 南에서 北으로, 東에서 西로 量田을 실시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곧 量田의 方向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片’·‘~庫’ 등의 용어는 특이한 것인데, 우선 ‘片’은 흔히 육지 부에서의 ‘땀기’와 같은 뜻으로 濟州에서는 ‘파니(되야기)’라 한다. 곧 畚二片 合五負는 논이 큰 파니·작은파니를 합쳐 두 개로 이루어지고 그 면적의 합계가 五負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논외의 경우에는 층계와 평지 가운데에 구획한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밭에서는 논에서 명명하는 ‘파니’와 구별하기 위해 ‘지름’이라고 부른다. 田二庫 合十負는 밭이 큰 지름·작은 지름을 합쳐 두 개로 이루어졌고 10負는 이를 합친 면적이다. 그러므로 畚二片·田二庫등은 地目으로 田畓의 形相임과 동시에 田畓을 구획한 것을 의미한다.<sup>4)</sup> 그 다음에 合五負·十負한 것은 地形의 實際 面積을 계산하여 얻은 田畓의 넓이(結負)<sup>5)</sup>로서, 田結에 대한 稅의 부과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 다음의 陳·起는 起耕田인가, 陳田인가를 표시한 것이며, 起奴已立·姜時傑 등은 현재 小作(耕作)하고 있는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西小路·南小路 등은 四標를 표시한 것이다.

4는 1726年(英祖2) 12월에 全羅道 大靜縣에서 작성한 量案으로, 內需司 無後奴婢 田畓을 買得한 者의 庫員 및 折價·落種數 등을 아울러 기록한 것이다. 본 量案을 작성한 관리는 通訓大夫 行靜縣監 濟州鎮管 兵馬節制都尉兼監牧 鄭運亨이며 대상이 된 지역은 2와 3자료의 것과 동일하다. 기재양식은 다음과 같다.

江汀里 故奴盃孫 己上 田畓秩  
無九奄員 畚二片 伍負 東李民雄田 南姜太石田 北奴出萬田 租種壹斗付 價木半疋  
徐文俊買

4) 一般 量案의 경우에 있어서는 直畓·方畓·直田 등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濟州의 경우 畚二片·田二庫 등으로 나타낸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다.

5) 結·負는 土地의 面積과 그 土地의 收穫量을 二重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計量法인데 이것은 穀禾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穀禾 1穗을 1把(한중)라하고 10把를 1束(한단), 10束을 1負 또는 1卜(한집), 100負를 1結이라하여 穀禾의 收穫量을 표시하는 단위인 동시에 收穫量을 産出할 수 있는 土地 面積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는 量田尺 1尺를 1把,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의 원칙하에 각 量田尺 實績 10,000尺 곧 100尺의 面積이 1結이 되는 것이다.

狛來里 故婢眞香今 己上 田畝秩  
 廣川員 畝拾片 伍負 東奴邊山畝 西北水洞 南李益茂畝 租種參斗付 價木拾參疋  
 金夏丁買

無九庵·廣川으로부터 伍負까지는 <자료 2와 3>의 기재 양식과 같은 것이다. 東李民雄田·南姜太石田·北奴出萬田 등은 四標를 밝힌 것이다. 租種一斗付·租種三斗付는 각 필지마다의 落種數를 말한 것이며, 그 다음에 價木半疋·價木拾參疋은 價木(값을 무명으로 환산해서) 半疋·十三疋을 표현한 것이다. 徐文俊·金夏丁 등은 買得人을 나타낸 것이다. 곧 기재 양식은 각 필지마다 所有地名·量田方向·地目·結負數·四標·落種數·價木·買得人의 순으로 되어 있다.

5는 1726年(英祖2)에 全羅道 大靜縣에서 작성한 量案으로 內需司의 己上田 중에서 買得文券이 있어 混入된 私田畝秩을 기록한 것이다. 본 量案을 작성한 관리는 通訓大夫行大靜縣監 濟州鎭管 兵馬節制都尉兼監牧 鄭運亨이며 대상이 된 지역은 <2와 3, 4>자료의 것과 동일하다. 기재 양식은 아래와 같다.

江汀員 二十負 田柳春興現納 其祖父 赤康熙壬子二月日 呈官成置文券  
 良老浦員 十二片 十二負 畝李益現納 順治二年己酉十月日 其曾祖父買得 呈官成置文券

江汀·良老浦員으로 부터 二十負·十二負까지는 <자료 2와 3,4>의 기재 양식과 동일하다. 柳春興·李益茂가 田畝에서 현재도 納稅하며 그 曾祖父·祖父가 順治二年(1645年·仁祖23)과 康熙二年(1663年·顯宗4)에 官에 보고하여 文券을 작성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 二. 內奴婢의 土地所有狀況

앞에서 살펴본 無後奴婢 個人田畝(量)案은 자식이 없는 公奴婢의 토지를 屬公하기 위하여 國家機關이나 內需司에서 所有權의 확인을 의해 작성한 것이다. 이들 자료에는 田畝의 원소유주인 각 노비의 소유지가 정확히 파악·작성되어 있는데, 바로 <자료 1·2·3>이 그것이다. 또한, 屬公이후 작성 당시에 時作 關係·耕作與否(陳·起로 구분하여 기록)를 첨기할 뿐

만 아니라 種穀과 稅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4>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료로 소개한 無後奴婢 田畓案들은 모두가 濟州·大靜 無後 內奴婢의 토지만을 그 작성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식이 없는 內奴婢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파악하여 內需司로 이속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곧 無後奴婢 田畓案에 등재된 田畓은 無後奴婢들의 생존 동안에는 그들의 私有地였으나 그들의 死後에는 소유권이 內需司에 귀속된 토지였다. 朝鮮時代에는 奴婢들이 토지를 비롯한 財産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奴婢에게 子女가 있는 경우에는 子女가 상속하게 되지만, 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公賤은 그가 속한 國家機關에, 私賤은 本主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法規에 따라 內需司에서 子女가 없는 財産을 屬公하기 위하여 그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작성한 것이 바로 『無後奴婢 田畓案』인 것이다.<sup>6)</sup> 여기 題名중에 己上(記上)이라는 용어는 원래 (장부·문서에) 기록하여 올린다는 의미인데 奴婢의 財産과 관련하여서는 “○○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올라 있는” 또는 “○○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올린”의 뜻으로서, 奴婢의 財産을 소속 官司나 上典이 차지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었다. 위의 자료에서 소유 관계를 표시하는 己上(記上) 등의 용어가 同一人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된 田畓案 사이에서도 기재된 경우에 속한다.<sup>7)</sup> 앞 절에서 제시한 자료를 분석하여 無後 內需司奴婢의 토지 소유 상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無後 內奴婢의 토지 소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無後奴婢 田畓案에서 제주·대정의 노비가 소유한 田畓의 結負數를 정리하면 같다. (표1)은 田畓案 가운데 1차에 작성된 田畓案에 기재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 (표1)은 陳田과 放賣한 사실이 있는 토지, 다른 사람과 相訟이 있었던 토지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처음에 작성된 田畓案에 의하면 제주 奴近山の 토지는 田 1結 18負 6束이며 대정 奴盃孫의 토지는 田畓 4結 67負 8束이고 婢眞香今の 토지는 田畓 5結 19負로 파악된다. 《經國大典》兵典 復戶條에 의하면 “平民이나 公私의 賤民으로서 率丁 五人이 있거나 또는 田 五結以下者를 耕作하는 자도 역시 復戶한다.”<sup>8)</sup> 그러나 內需司 奴婢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內需司 奴婢가 여러 公賤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復戶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다가 內需司 奴婢의 復戶의 문제는 《大典續錄》에서 법제

6) 『無後奴婢 田畓案』은 內需司를 비롯한 官房에서 이미 사망한 無後內奴婢들이 소유하고 있던 田畓을 파악·屬公한 뒤 官房에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 연원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7) 『無後奴婢 田畓案』은 無後奴婢의 개인재산을 속공하고 그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奴婢 死後에도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작성되어 같은 지역·같은 奴婢의 個人 田畓案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8) 經國大典 兵典 復戶條

## 〈표1〉 濟州·大靜 無後奴婢 土地所有狀況

	好 近 山		奴 盃 孫		婢 眞 香 今	
	田	畓	田	畓	田	畓
제 주	118.6 (1結18負6束)					
대 정			408 (4結8負)	59.8 (59負8束)		
대 정					458.5 (4結58負5束)	60.5 (60負5束)
계	118.6 (1結18負6束)		467.8 (4結67負8束)		519 (5結19負)	

화되었는데 《大典續錄》에 의하면 “內需司의 復戶의 문제는 田 五結以下者로 규정하여 규모는 적지만各司 外居奴婢와 마찬가지로 자기 경리를 가질 수 있음을 법제화하고 있다.”<sup>9)</sup>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제주 奴近山 田 1結 18負 6束, 대정 奴盃孫 田畓 4結 67負 8束, 대정 婢眞香今의 경우 田畓 5結 19負 등으로 파악하는 것도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대정 婢眞香今의 경우 5結 19負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상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相訟으로 인한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5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나타내어 준 것이다. 요컨대 법제화된 5結 이하의 토지만을 자기가 경리할 수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故 婢眞香今 田畓秩

浦尾員 畓二十二片 合十負 起李戒白 姜尚雄 有文券 懸頓

望田負 田七負五束 起姜禹周 李漢芳 有文券 懸頓

즉, 浦尾員의 논 가운데 22개 과니를 합쳐 10負 되는 것으로서, 李戒白이가 起耕者이며 婢眞香今이가 所有主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제상의 所有主人 곧 姜尚雄이가 사고로 인해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 까닭으로 姜尚雄이가 買得文券을 증거로 삼아 사고로 인해서 소유에서 제외된 것을 밝혀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9) 大典續錄 兵典 搖賦條

서 발견된다. 먼저 奴盃孫의 경우를 살펴보면, 江汀員에서 田 20負를 柳春興이 懸頓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2와 3>이 여기에 속한다. 婢眞香今の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良老浦員 東凡畚十二片 合十二負内 起四負 李益茂  
 起五負 姜士齊  
 起三負 成以海 李益茂 有文券 懸頓

즉, 畚의 경우 12負로 李益茂가 買得文券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사고로 인해서 소유에서 제외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豆入田員 南凡田六負 起奴李吉 李時延 有文券 懸頓  
 赤田員 北凡田二十六負内 起十三負 張己立  
 起十三負 奴宋先 李漢芳 有文券 懸頓  
 造明水員 田二庫合十一負内 起一負 奴春今  
 起二負 金武鉄  
 陳四負七束 金武鉄  
 起三束 奴卜了  
 起三束 吳尚元  
 起二負四束 奴丁金  
 起三束 李有方 李時延 有文券 懸頓  
 獐水員 北凡田四負 起金就英 有文券 懸頓  
 赤田員 田七負 陳金就英 有文券 懸頓

즉, 田은 望田員 7負 5束과 함께 위의 것을 합쳐서 61負 5束으로 李漢芳·李時延·金就英등이 買得文券이 있다고 보고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婢眞香今の 경우에는 田畚을 합쳐 83負 5束이 買得文券이 있음으로 인해 기록이 된 것이다. 따라서 奴盃孫의 田은 4結 8負에서 20負를 제외하면 3結 88負가 되며, 婢眞香今の 경우에는 田 4結 58負 5束에서 61負 5束을 빼면 3結 97負가 됨과 아울러 畚은 60負 5束에서 22負를 감하면 38負 5束이 된다. 그러므로 奴盃孫의 경우에는 田 3結 88負와 畚 59負 8束으로 田畚의 합계가 4結 47負 8束이 되며, 婢眞香今の 경우에는 田 3結 97負와 畚 38負 5束으로 田畚의 합계가 4結 35負 5束이 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2)와 같다.



〈표2〉 濟州·大靜 無後奴婢 實起耕 陳田畝 結負數

區分	起田	陳田	起畝	陳畝	相訟	起耕陳田畝
奴近山	46負4束	全陳72負2束 陳46負4束				92負8束
奴盃孫	2結41負5束	1結66負5束	30負	29負8束	田20負(起3負 陳17負)	4結47負8束
婢眞香今	3結69負5束	89負	48負	12負5束	田61負5束(起49負8束 陳11負7束) 畝22負(起22負)	4結35負5束

(표2)에 의하여 볼 때 奴盃孫의 경우에는 田 3結 88負와 畝 59負 8束으로 田畝 합계가 4結 47負 8束이 되며, 婢眞香今의 경우에는 田 3結 97負와 畝 38負 5束으로 田畝의 합계가 4結 35負 5束이 된다. 따라서 이들도 “5結이하자는 復戶” 한다는 규정에 의해 복호되었을 것이다. 奴婢가 법제화된 5結이하의 토지만을 자기 경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법제적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土地所有에 있어서의 계층 분화를 살펴 보면, 제주 奴近山은 46負 4束(起田)인데 田만을 소유하여 25負와 50負사이로서 소유토지 경작만으로는 기본 생계의 유지도 어려웠다. 곧 零細小農層으로서의 自作農所得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家計를 지탱하기에 가능한 전력을 다하였다.<sup>10)</sup> 대정 奴盃孫은 2結 68負 5束(起田畝)이며 婢眞香今은 3結 47負 5束(起田畝)이어서 이들은 1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富農인 셈이다. 이는 곧 비교적 여유가 있는 富農層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표2)에서 보듯이 濟州·大靜 無後奴婢가 많은 田畝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田도 대부분 陳田이어서 濟州의 경우에는 46負 4束으로 39.12%가 된다. 大靜의 奴盃孫의 경우에도 陳田이 1結 66負 5束으로 40.56%이며, 陳畝이 29負 8束으로 49.83%가 된다. 婢眞香今의 경우에는 陳田이 89負로 19.41%이며 陳畝는 12負 5束으로 20.66%가 된다. 그런데 大靜의 奴

10) 土地臺帳상의 起主를 중심으로 할 때에, 富農, 中農, 小農, 貧農의 숫자적인 기준을 각각 1結 이상, 50負내지 1結, 25負내지 50負, 25負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金容燮 <量案의 연구—朝鮮後期の 農家經濟> <朝鮮後期農業史研究>—潮閣, 1980年の 분석틀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孟孫의 경우에 전체 田畝에 있어서 陳田畝는 1結 96負 3束으로 41.96%가 되며, 婢眞香의 경우에도 전체 田畝에 대한 陳田畝는 1結 1負 5束으로 19.55%가 된다. 한편, <資料1>에 의해 濟州 奴近山의 경우에 소유토지에 대한 陳起여부를 살펴보면, 아래(표3)과 같다.

(표3)에 의해 成丹員의 경우에 살펴보면, 1720-1721년까지는 奴明吉이가 경작하고 1722-1724년까지는 陳田으로 놓아 두었다가 다시 1725년에 奴戒還이가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런 경우는 (표3)에서 보듯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한 지경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삼년동안 쉬고 난 다음 한해동안 경작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곧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켜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濟州島 농경방식에 있어서 輪作制가 존재하는데, 이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런 사실을 陳田에 대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1720年 陳田	37負4束	1721年 陳田	37負4束
1722年 陳田	40負9束	1723年 陳田	35負9束
1724年 陳田	30負		

위에서 보듯이, 1720年~1722년까지는 陳田이 중점적이었고 1723-1724년에는 토지를 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陳田이라고 하는 것은 廢田이 된 것으로 想起하지만, 今年에 耕作하지 못한 토지는 今陳이며 翼年에 가서 耕作하지 못하면 全陳(舊陳)이라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이 今陳田이 量案에 있어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곧 時作<sup>12)</sup>이 陳田을 보유한다는 것은 翼年에 그것을 다시금 耕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陳田은 起主와 時作에게 耕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는 언제든지 起田이 될 수 있는 土地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 奴近山은 1720년부터 1725년까지에 있어서 1年(1725)동안 耕作한 土地가 46負4束이며 2年(1720-1721, 1724-1725)간 耕作한 土地가 8負3束이고 3年(1723-1725)동안 耕作한 토지가 6負, 6年(1720-1725)간 耕作한 土地가 5負5束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를 풀어보면 1720년에 耕作한 土地가 9負이며 1721년에 耕作한 土地는 9負이고 1722년에 耕作한 土地가 5負5束이며 1723년에 耕作한 土地가 10負5束이고 1724년에 耕作한 土地는 15負4束, 1725년에 耕作한 土地가 46負4束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곧 때에 따라 耕作한 것을 통합하여 계산하여 계산해보

11) 1720년 이전에 여기에 나오는 지명의 토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2) 時作은 그때에 경작하는 사람으로, 곧 作人을 일컫는다.

## 〈丑3〉 濟州 奴近山 所有土地 陳起與否

地 名	期 間	耕作與否	結負數	耕作人	地 名	期 間	耕作與否	結負數	耕作人
成丹員	1720-1725	全陳	4負		戒實員	1720-1724	陳	1負5束	
同 員	1720-1725	全陳	4負			1725	起		奴近先
同 員	1720-1721	起	3負5束	奴明吉		1720-1724	陳	3負	
	1722-1724	陳				1725	起		奴安立
	1725	起		奴戒還		1720-1725	全陳	4負	
同 員	1720-1724	陳	4負		仇里水員	1720-1725	全陳	5負	
	1725	起		吳元於		1720-1724	陳	3負	
牛羅員	1720-1725	起	2負5束	洪致吉		1725	起		奴戒還
	1720-1725	起	2負	奴卜還	桶水員	1720-1725	全陳	11負	
	1720-1725	起	1負	奴致長	王子位員	1720-1725	全陳	12負	
益漢員	1720-1725	全陳	5負			1720-1725	全陳	7負	
	1720-1724	陳	4負			1720-1724	陳	4負	
	1725	起		奴今先		1725	起		梁取赤
刷莫員	1720-1725	全陳	15負			1720-1723	陳	1負8束	
	1720-1722	陳	5負			1724-1725	起		奴安立
	1723-1725	起		奴明吉		1720-1723	陳	3負	
月仇非員	1720-1725	全陳	5負2束			1724-1725	起		奴上位
	1720-1724	陳	3負						
	1725	起		奴日運					

면 95負8束이 되며 年間 平均耕作한 土地는 16負1束으로 나타난다. 한편, (資料4)에 의해 落種數를 파악해 보면 아래(표4)와 같다.

〈표4〉 大靜 無後奴婢 落種數 比較

	奴 盃 孫	婢 眞 香 今	合 計
租 種	14斗7升 (59負8束)	22斗5升 (60負5束)	37斗2升 (120負3束)
粟 種	3斗7升 (10負)	17斗6升 (200負)	21斗3升 (210負)
牟 種	47石2斗 (380負)	41石 (290負)	88石2斗 (570負)

(표4)에 의하면, 租種인 경우에는 畝地에만 낙종하여 14斗7升을 뿌렸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資料4〉에 의하면 租種壹斗付, 租種參斗付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육지부의 경우처럼 “斗落只”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斗付只”라고 기술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일단 濟州의 경우에 “斗付只”가 田畝의 일정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관례상 畝의 경우 1斗付只를 150坪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면적의 정확함을 알기 위해서는 濟州 지방에서의 度量衡의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이것은 아직 과제로 남겨 둘 뿐이다. 또한, 이 田畝에 대한 平均收穫量은 여기에 나타난 地名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 날씨(기온), 일조량 문제 등을 아울러 참고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三. 內奴婢 土地所有의 性格

앞 절에서 內奴婢가 土地를 所有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財產所有權의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는 일반 良人의 그것과 다른 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노비로서 子孫이 없어 사망한 경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소유권이 主人이나 소속 官司에 귀속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奴婢의 주인이나 소속 官司에서는 그들의 財產處分權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無後奴婢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소유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無後奴婢가 제3자에게 매도한 土地가 그 死後 內需司에서 無後奴婢의 所有土地로 일괄 파악되어 문제가 된 것이 濟州·大靜 無後奴婢 田畝案 자료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大靜의 奴盃孫·婢眞香今의 소유토지였다. 이들 土地의 처리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大靜縣 奴孟孫의 경우 田20負(江汀員)를 孟孫이 柳春興에게 放賣한 바 있었는데<sup>13)</sup>, 이것을 內需司에서 다시 無後奴婢 所有土地로 파악하여 屬公한 후 高允文에게 木 15疋에 放賣하고 있다.<sup>14)</sup> 婢眞香의 경우 田과 畓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畓의 경우를 살펴보면, 畓 12負(良老浦員)을 婢眞香이 李益茂에게 放賣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內需司에서 다시 無後奴婢 所有土地로 파악하여 屬公한 후 姜嗣齊와 李益茂에게 木 10疋에 放賣하고 있었다. 여기서 곧 李益茂가 買得人으로서 다시 사들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浦尾員 畓 10負를 婢眞香이 姜尚雄에게 放賣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內需司에서 다시 無後奴婢 所有土地로 파악하여 屬公한 후 姜尚雄에게 木 13疋에 다시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田의 경우를 살펴보면, 望田員 田七負五束을 婢眞香이 李漢芳에게 放賣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內需司에서 다시 無後奴婢 所有土地로 파악하여 屬公한 후 姜祐周에게 木 7疋에 다시 매각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田에 있어서는 赤田員 田 26負, 造明水員 田 10負 등이 된다. 그러므로, 婢眞香의 所有土地 가운데 田 22負와 田 54負5束도 5인에게 放賣되었으나 內需司에서 屬公한 후 다시 木 83疋에 매각하고 있었다. 이때 眞香에게서 畓 10負를 매득 하였던 姜尚雄만이 매입하고 나머지 모두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제3자의 매각된 경우에도 起耕者와 매각한 者가 일치한 곳도 두 군데가 된다. 이는 곧 良老浦員과 望田員으로서 李益茂와 姜祐周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이와 같이 無後奴婢 田畓을 둘러싸고 內需司와 買得人 사이의 所有權 분쟁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無後奴婢가 生前에 처분한 土地에 대해서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內奴婢를 비롯한 公奴婢들의 土地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나, 內需司에서 屬公한 大靜縣의 無後奴孟孫과 婢眞香의 田畓을 放賣했을 때 이를 買入한 者가 모두 109명이었다. 그중에 奴婢는 40명으로 곧 奴婢들이 良人과 함께 土地 買入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公奴婢는 제외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公奴婢는 아니었지만 奴婢가 土地의 放賣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濟州지역 古文書를 파악하여 보도록 하자.

雍正拾貳年 甲寅 貳拾陸日 玄道明 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之處同人處 柒升木貳疋 又拾五尺 賃用後價本段 矣祖上流來耕食田

13) <자료 2와 3>에 의하면 江汀員 20負의 柳春興 有文券 懸頓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자료5>를 통하여 柳春興이 江汀地境에서 현재에도 納稅하며 그 祖父가 康熙 2年(1663)에 官에 알려 文券을 成置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4) <자료4>에 의하여 알 수 있다.

玉城門員 皮牟肆斗付只 標東奴千好田 西任取明田 南小路 北姜羽朱田 標內田庫乙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相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寺婢丁金(右手寸)

證人 姜呂奧(手決)

執筆 姜通齊(手決)<sup>15)</sup>

1734년(英祖10) 2月26日 田主 寺婢 丁금이 玄道明에게 玉城門員에 있는 皮牟4斗付只를 賣渡하였던 文記로서, 寺婢 丁금이 玄道明에게 七升木 二疋과 十五尺을 貸用한 후 값지 못하게 되자 玉城門員 皮牟4斗付只의 토지를 주는 것으로서 해결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는 寺婢가 所有田畝의 일부를 放賣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奴婢들의 土地를 買入하거나 放賣하는데 하등의 제약이 없었다. 無後奴婢의 경우도 田畝를 放賣하는데 법제적으로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으나, 그들의 公奴婢인 경우에는 그 死後에 所有權사의 선익의 買得人 사이에는 所有權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無後奴婢 財産을 屬公하도록 한 법규정 때문이었지 그들의 財産 처분권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곧 無後奴婢 所有主人 國家機關이 財産을 증식하려는 의도에서 합법적인 매매까지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결과였다.<sup>16)</sup> 이와 같이 王室 財産을 관리하는 內需司는 專制王權의 비호하에 個人兩班 私奴婢主보다 더 용이하게 奴婢의 土地 所有權을 제약하면서 土地를 집적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奴婢가 放賣한 土地를 內需司田으로 파악한다거나 無後奴婢가 生前에 放賣한 경우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屬公한 예들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奴婢의 田畝는 所有權이 奴婢에게 귀속되어 있는 土地이어서 이것이 內需司나 國家機關에 屬公되면 有土免稅田<sup>17)</sup>

15) 이 자료는 雍正 12年(1734·英朝10)에 작성된 土地賣買文記로서, 筆者의 마을인 猓來-玉城門 <옥생이 올래>지역에 관한 것이며, 筆者가 所藏하고 있다.

16) 全炯澤 <17·18세기 內奴婢의 土地所有>, p.35

17) 折受地·買得地·民結免稅地로 구성된 宮房田은 18세기 중엽이후 有土와 無土로 분화되어 나아갔다. 처음에는 有土·無土를 국가입장에서 토지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 有土免稅·無土免稅라는 면세지 파악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소유권의 귀속 여부까지 포함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有土는 대체로 형성방법에 따라 永作官屯과 有土免稅로 구분되어 파악하는데 買得地·折受地가 포함하는 永作官屯으로서 陳廢되어도 移授·移換할 수 없는 宮房의 소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有土免稅地에는 導掌을 파견하여 每負에 租2와 즉 結당 200斗를 수취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有土에는 宮房의 확실한 소유지로서 宮房(地主)-作人(佃戶)관계를 이루고 있는 宮房田과 함께 宮房田내에서 民人들의 일정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宮房(收租者,地主)·中畝主·導掌(地主)-作人(佃戶)의 구조를 이루고 이는 庄土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宮房 有土에서의 二重所有構造는 民人들의 소유권의 성장의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宮房의 私

이 되기 때문에 內需司나 國家機關은 이를 통하여 土地를 용이하게 집적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內需司에서는 「無後奴婢 田畝案」을 작성하면서 無後奴婢의 所有土地를 집요하게 파악하여 民人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이다. 無後奴婢의 田畝는 그 死後에 內需司 田畝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반 良人이 無後奴婢의 田畝를 買入하더라도 사실상 所有權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買得文券을 가지고도 內需司에 土地를 몰수당하고 耕作權만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奴婢의 財產所有는 法制上으로 그들의 신분적인 예속상태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약이 뒤따랐다.

한편, 먼저 內需司에 所有權이 귀속된 無後奴婢 田畝를 중심으로 內需司田이 濟州에서 어떻게 耕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無後奴婢 田畝의 耕作人을 신분별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濟州·大靜 無後奴婢 田畝의 耕作人 身分別 比較

구 분	姓 名	奴 婢	良 人
濟 州	奴 近 山	10명(奴-10명)	3명
大 靜	奴 盃 孫	45명(奴-39명) (婢-6명)	20명
	婢眞香今	45명(奴-40명) (婢-5명)	21명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時作人 가운데 奴婢가 內奴婢인지 私奴婢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私奴婢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18)</sup> 설령 이들이 內奴婢라 하여도, 이미 內需司田이 전적으로 內奴婢에 의해서 耕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그럼으로 이것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奴婢의 奴近山·奴盃孫·奴眞香今의 경우에 土地를 耕作하는 사람이 奴婢 또는 良人이었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奴婢時作人 가운데 內奴婢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들은 다른 奴婢나 良人과 같이 時作人으로서 동등한 조건으로 土地를 耕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內奴婢 신분이었기 때문에 內需司田을 耕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sup>19)</sup> 또한, 李元鎮의

的·公的 地主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宮房田 有土내에서 起主·中畝主는 자신의 토지를 사실상의 소유권으로서 轉相賣買하였다. (朴準成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pp.247-260《韓國史論》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참조)

18) 全炯擇 <17·18세기 內奴婢의 土地所有>, p.41

19) 全炯擇 <17·18세기 內奴婢의 土地所有>, p.41-42

《耽羅志》와 李衡祥의 《南宦博物志》, 그리고 《乾隆五十二年內需司及各宮房田畝摠結與奴婢摠口都案》과 編者未詳의 《濟州大靜旌義邑誌》를 참고로 하여 濟州·大靜에서 內需司 奴婢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濟州·大靜 內需司 奴婢 變化比較

	耽羅志	南宦博物志	乾隆五十二年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牧	378口	奴婢時存 427口	奴133口 婢148口	奴352口 婢372口
大靜縣	30口		奴2口 婢15口	
計	408口	427口	298口	724口

(표6)에서 보듯이, 《耽羅志》에서 《南宦博物誌》까지는 奴婢數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乾隆五十二年》에 이르러 갑자기 감소하고 있다. 이는 〈奴良妻所生從母役法〉이 제정된 이래 免賤이 되어서 良民이 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1699년에 이르러서야 어머니의 신분이 양인신분이면 그 자식은 모두 양인이 되고 良役に 소속하게 된다는 「從母役法」이 완전히 실시되었던 것이다.<sup>20)</sup> 그러던 것이 1755년에 실시된 減貢조치에 의해 良人の 개혁에 이어서 公奴婢의 身貢制度도 크게 개혁되었다.<sup>21)</sup> 곧 身貢品目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木(線布)」를 예로 들어보면 2疋을 과하고 있었던 官司에서는 婢에 대해서도 奴와 똑같이 2疋을 과하고 있었고 이들 官司가 他司에 비해 가혹하게 身貢을 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이때의 개혁에 의해 奴는 2疋, 婢는 1疋로 균등하게 과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앞의 (표3)과 (표4)에 의하여 볼 때, 濟州 奴近山의 경우에 속한 土地를 보면 陳田과 起田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따라서 6년동안 계속 休耕한 土地가 있는 반면에 1-2年 休耕하였다가 耕作한 土地도 있었다. 이는 濟州地方에 있어서 休閑法에 의한 재배와 輪作制가 존재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濟州風土記》와 《耽羅志》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20) 《承政院日記》제212책 顯宗10年 正月 初10日條

《顯宗改修實錄》권20 顯宗10年 正月 甲辰條 「命公私賤良妻所生 一從母役 立制定式」

21) 1755년에 실시된 奴婢身貢의 개혁이란 것은 奴婢의 身貢量을 감소시키면서 노비간의 貢量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婢貢을 奴貢의 半額으로 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개혁에 의해 身貢이 감소된 것은 奴婢의 재정적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간 것을 뜻하며, 이것은 바로 奴婢의 신분적 해방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섬중에 넉넉한 사람들의 경우는 밭에 있는 山稻의 작물로서 쌀을 대신하여 사용함으로 山稻를 파종한 밭에 이르러서는 여러 해를 지나서 재삼 밭을 뒤집힌 연후에 가히 씨앗을 뿌릴수 있는 까닭으로 풀을 제거하는 일도 역시 감절이 되어 하는 바가 심히 고된 것이니라.”  
《濟州風土記》<sup>22)</sup>

“州記에 토양의 바탕을 뜨고 말라서 개간한 전지는 반드시 牛馬를 몰아 밟아야 하며 연이여 2·3년을 耕作함에 이르러서는 이삭이 여물지 않아서 부득이 다시 새로운 田地를 개간하는 일이 되니 노력도 감절이 되며 수확은 적고 백성은 많음으로 인해서 곤궁하는 까닭이니라.”《耽羅志》<sup>23)</sup>

“대개 이 섬의 土地는 척박하여 해마다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릴 수 없었다. 비록 경계를 바르게 하여 上이 될지라도 옛날 메마른 전지를 번갈아 함께 다 같이 쉬는 것을 받아 들이니 土地의 生産力이 알맞은 정도를 자세히 살펴 묵은 것을 공급하여 기경함에 따라 세금이 따르는 것이 마땅히 그런 것이니라.”《耽羅志》<sup>24)</sup>

위에서 보듯이, 濟州의 土地는 척박하여 耕作할 수 없기 때문에 두해에 한해는 休耕함을 밝히고 있다. 곧 濟州 農地 대부분이 休閑 재배되고 있으며,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이 輪作地이다. 이 輪作방식의 몇 種이 있다는 것보다 「隨意變換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輪作制에 있어서는 海岸(集約)·山間(粗放) 지역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海岸地帶가 地力이 최고로 높으므로 年作常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地力회복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山間地帶의 경우 地力이 가장 낮으므로 3-10년에 1作할 뿐이었다. 즉, 地力회복이라는 측면에서 休閑재배함으로써 輪作制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료4>에 의해서 볼 수도 있었다. 畝 15片에 2負8束이며 租種 1斗6升인 토지인데, 이 토지를 木 3升到 매각하는 것이다. 또한 畝 7片에 2負5束인데 租種 1斗8升을 木 5正에 매각하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土地 중에서 地力(畝地)과 수확량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서 매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

22) 李 健 《葵窓集》卷五 〈濟州風土記〉

“島中 饒富之人 則種山稻於田 以代米用 而山稻所種之田則 經年糞田 再三翻耕然後 乃可播種 而鋤草之功 亦倍爲之甚苦”

23) 李元鎮 《耽羅志》〈風俗條〉 地瘠民貧

“州記 土性浮燥 墾田必驅 牛馬以踏之 連耕二三年則 穀穗無實 不得已 又墾新田功倍 獲小所以 民多困窮”

24) 李元鎮 《耽羅志》〈田結條〉

“此島 土薄不得 逐年耕種 雖正經界爲上 古下田疊受 互休地力之制 詳審給陳 隨起隨稅 似當”

이, 內需司田의 耕作에 있어서 內奴婢가 동원될 수 없었던 것은 內需司奴婢들의 유망이 심하였던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서 內需司에서는 內奴婢를 內需司田畓에 耕作하는 데 동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內奴婢는 소속 官房에 대해서는 이제 身貢납부의 의무만을 지고 있을 뿐 경제적으로 內需司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면, 18세기에 들어와서 濟州·大靜 內奴婢들의 소속 官司에서의 경제적 예속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奴盃孫과 婢眞香今 등이 富를 축적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신분적 예속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상승시키면서 소속 관사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1차에 작성된 田畓案 가운데 濟州 奴近山の 토지는 田 1結18負6束이며 大靜奴盃孫의 토지는 田畓 4結67負8束이고 大靜婢眞香今의 토지는 田畓 5結19負가 된다. 또한 濟州奴近山の 경우 때에 따라 경작한 토지는 95負8束이며 年間平均 경작한 토지가 16負 1束이 된다. 大靜奴盃孫·奴眞香今의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하던 사람들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實起陳田畓은 奴盃孫의 경우 4結47負8束이며 婢眞香今의 경우에는 4結35負5束이 되었다. 곧 內需司 奴婢는 조선초기에 ‘5結이하만이 토지를 復戶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자기 경리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신분적인 예속에 있는 奴婢들도 토지를 매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無後奴婢가 生前에 放賣한 토지도 內需司田으로 屬公할 수 있었던 점으로 인해서 民人들과 마찰을 빚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無後奴婢 田畓案에 있는 田畓을 경작하던 사람(起耕主)이 그들이 경작하던 토지를 다소 매입한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奴婢들도 奴婢 ○○라고 밝혀서 買得하였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면 우선 戶籍大帳을 통해서 公奴婢인지 私奴婢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公·私奴婢들도 土地를 買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후에 地目的 四標가운데 기재된 東·西·南 北의 田畓主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의 이름과 노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다. 田畓主의 신분적인 지위관계에서 노비는 率居奴婢인지 外居奴婢인지, 또한 私奴婢인지 公奴婢 분명하게 파악이 이루어져야 奴婢의 신분적인 예속관계 및 경제적 예속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마을에서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戶口單子中草》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수 사노비가 각 마을에서 토지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마을에서 內需司田은 얼마만큼 점유하는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土地賣買記·許與給記·都許文(財産分給記) 등의 자료를 찾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